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4(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력거래 등) ① 법 제16조의5 제1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의 거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간 제공하여야 한다.

1.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2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
3. 그 밖에 설비 및 요금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

③ 법 제16조5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, 제5호의3서식, 제8호의3서식,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기신사업 [] 등록
[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등록신청 내역	성명(대표자)	상호(명칭)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사무소 소재지	
	(전화번호 :)	
전기신사업 종류		
[]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[]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		

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제1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
([] 등록 [] 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(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)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 신청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사업계획서 나. 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	2.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
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
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제 호

전기신사업 등록증

(전기자동차충전사업, 소규모전력중개사업,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)

- 성명(대표자):
- 상호(명칭):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
- 사무소 소재지:
- 등록 연월일: 년 월 일
- 기타:

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
기신사업(전기자동차충전사업, 소규모전력중개사업,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)을
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※ 비고 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- 6번란에 적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

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상호(명칭)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사무소 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	전기신사업 종류		
[]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[]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			
신고 내용	등록번호		
	등록 연월일		
	지위승계 연월일		
	지위승계 원인		
[] 양수 [] 상속 [] 합병 [] 분할			

「전기사업법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신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양수의 경우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2.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.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: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전기신사업 약관
[] 신고서
[]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상호(명칭)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사무소 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전기신사업 종류			
[]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[]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			
약관 변경내용			

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([] 신고 [] 변경신고)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(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)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전기신사업 약관 나.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2. 변경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·구 대비표 나.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7조의4(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력거래 등)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의 거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간 제공하여야 한다. 1.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량 2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. 그 밖에 설비 및 요금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

	③ 법 제16조5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-	---